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6. 10.(목) 10:00

제229회 금천구의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자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05호
- 나. 제 출 자 : 김영섭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1. 5. 28.
- 라. 회부일자 : 2021. 5. 28.

2. 제안이유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 규정(안 제3조)
- 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마.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대해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1. 5. 28. ~ 6. 2.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 착한 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 1)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해 규정(안 제3조)
 -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따르도록 함.
- 2)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하는 등 본 제도의 정착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3)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지속적 유지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타당하다 봄.
- 4)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5)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에 대해 규정(안 제7조)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개인서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을 제공하는 업소를 발굴, 지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
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